

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
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과태료 부과 ·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
- 나. 2004. 7. 1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· 보완하기 위함

2. 관련법령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제40조, 제41조, 제42조, 동법시행령 제8조, 제9조, 제50조, 동법시행규칙 제4조, 제28조, 「과태료 부과 ·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」

3. 주요골자

- 가.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(안 제8조제1항)
- 나. 같은 날에 신고 건수가 많은 경우 사실확인 요청서 발송기간을 연장(안 제12조제1항)
- 다.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(안 제13조제1항)
- 라. 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· 대형점 · 쇼핑센터, 도매센터 ·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”를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”로 개정(안 제14조제1항제2호, 별표1)

- 마.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전국 기준 월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 (안 제14조제1항제5호)
- 바.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하향 조정(별표1)

4. 검토의견

본조례 개정건은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과 「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」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4. 7. 1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감안
-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와 신고포상금을 현행 현금위주에서 현금과 현물을 병행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개선과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 100만원을 전국기준에 맞게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은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위민봉사행정의 표상이라고 판단되며
- 특히 지급방법개선과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등이 관련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개정은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됨